

療養取扱機關一括指定 및 診療費審査·支拂業務一元化에 관한 業務處理 要領

— 目 次 —

| | |
|-------------------------------|-----|
| I. 療養取扱機關 一括指定 | 420 |
| 1. 一般事項 | 420 |
| 가. 指定對象機關 | 420 |
| 나. 指定方法 | 420 |
| 다. 指定除外基準 | 420 |
| 라. 指定節次 | 420 |
| <節次圖> | 420 |
| <細部節次> | 421 |
| 마. 療養取扱機關의 取消 | 421 |
| 바. 療養取扱機關指定의 變更等 | 421 |
| 사. 療養取扱機關의 利用業務 處理節次 | 421 |
| <別添書式> | |
| 書式 1, 2 | 422 |
| 書式 3 | 425 |
| 書式 4, 5 | 426 |
| 書式 6, 7 | 427 |
| <別紙 1> 醫療保險 被保險者證 | 429 |
| 2. 措置事項 | 424 |
| 가. 診療費收納口座開設 | 424 |
| 나. 療養取扱機關現況 變動申告書提出 | 424 |
| 다. 療養取扱機關標識板附着 | 424 |
| 라. 指定番號變更 | 428 |
| 3. 公知事項 | 428 |
| II. 診療費審査 및 支拂業務 一元化 | 431 |
| 1. 一般事項 | 431 |
| 가. 基本方針 | 431 |
| 나. 診療費審査 및 支拂業務處理節次 | 431 |
| <節次圖> | 432 |
| 2. 診療費請求 | 431 |
| 가. 請求節次 | 431 |
| 나. 記載要領 | 431 |
| 3. 診療費支給 | 431 |
| 가. 審査結果通報 | 431 |
| 나. 診療費支給 | 431 |
| 다. 異議申請 | 431 |
| <別添書式> | |
| 書式 8 | 433 |
| 診療費請求書記載要領 | 434 |
| <別紙 2> 請求書 接受業務 代行組合 名單 | 435 |
| <別紙 3> 診療酬價請求明細書記載要領 | 436 |

I. 療養取扱機關 一括指定

1. 一般事項

가. 指定對象機關

1) 全國醫療保險協議會(以下“協議會”라 한다)는 醫師會, 歯科醫師會, 助產員會, 藥師會 其他 醫藥關係團體(以下“醫藥關係團體”라 한다)와 協議하여 療養取扱機關을 指定한다(醫療保險法 第32條에 의거 79.5.14字로 保健社會部長官이 協議會에 指定指示).

2) 79.7.1부터 療養給與를 행하는 療養取扱機關의 對象은 綜合病院, 病院, 醫院, 歯科病院, 歯科醫院 및 助產所로 한다. 다만, 本 對象에서 除外된 機關은 關係團體와 別途 協議하여 追加 指定한다.

나. 指定方法

1) 協議會는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各道 行政區域 單位로 診療地域圈(以下“診療圈”이라 한다)을 設定하여 療養取扱機關을 指定한다(法 施行規則 第19條).

2) 1)項의 診療圈內에 居住하는 被保險者와 被扶養者는 該當管轄診療圈內의 指定療養取扱機關에서 診療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緊急 其他 不得已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3) 事業場 附屬醫療機關은 當該 事業場의 被保險者와 被扶養者의 診療에 한한다.

다. 指定除外基準

療養取扱機關을 指定함에 있어 다음 각 項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指定에서 除外한다.

1) 休業 또는 廢業中인 醫療機關 및 藥局

2) 醫療機關 또는 藥局을 開設하고 그 業을 하는 者가 老齡 또는 심신장애로써 醫療保險給與業務를 담당하기 어려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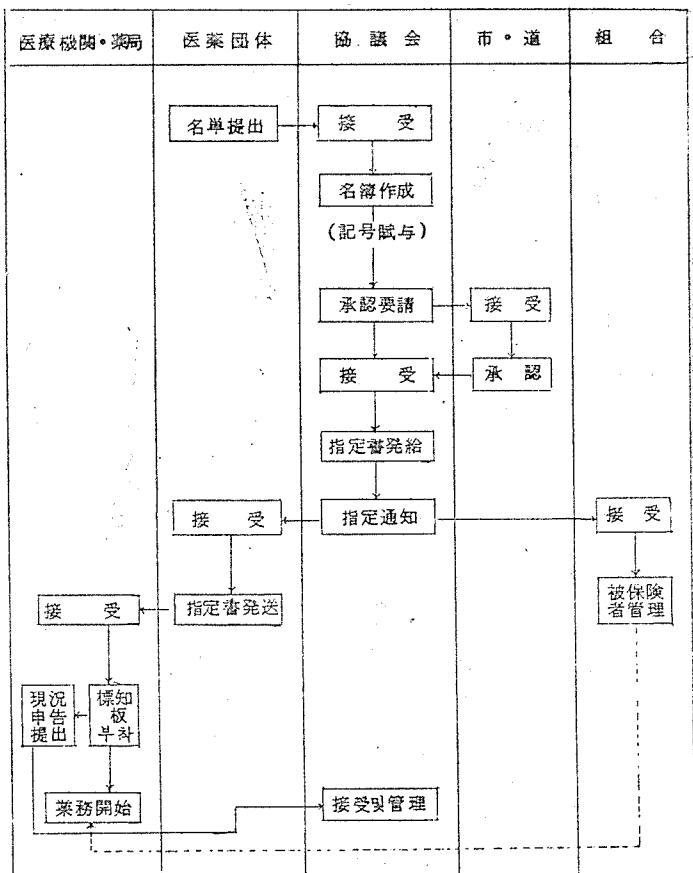
3) 療養取扱機關으로서 위법, 부당한 保險給與 또는 診療費 등의 非行이 있어 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者

4) 事業場 附屬醫務室(단, 해당사업장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에 한함)

5) 其他 療養取扱機關으로 指定함이 不適當한 醫療機關

라. 指定節次

< 節 次 図 >



<細部節次>

- 1) 醫藥關係團體는 療養取扱機關指定 對象名單을 作成, 協議會에 提出한다(別添書式 1 參照).
- 2) 協議會는 療養取扱機關 指定記號를 賦與한 名簿를 作成하여 各市道知事에게 療養取扱機關指定 承認申請書를 提出한다.
- 3) 協議會는 各市道로부터 療養取扱機關 指定承認書를 接受하는 즉시 醫藥關係團體로 하여금 各該當指定 療養取扱機關에 7日 以內에 通知하도록 依頼한다. 이 경우 協議會는 指定書를 發給한다(別添書式 2 參照).
- 4) 3)項에 의하여 指定받은 療養取扱機關은 “의료보험요양기관”이라는 文字(녹색 한글)를 표기한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褐色 標知板을 그 施設의 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 5) 療養取扱機關은 指定받은 즉시 療養取扱機關現況을 醫藥團體경유하여 協議會에 提出한다(別添書式 3 參照).
- 6) 醫藥關係團體는 各該當所屬 指定療養取扱機關에 醫療保險給與에 關한 諸般事項을 弘報한다.

마. 療養取扱機關의 取消

가) 取消基準

療養取扱機關은 다음 각項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그 指定이 取消된다.

- 1) 醫療保險法의 規定에 의한 療養取扱機關 指定取消要件에 該當된 때(法 第33條)
- 2) 醫療法 및 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免許取消, 許可의 取消, 資格停止 또는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때
- 3) 醫藥關係團體에서 制裁處分等을 받은 자로서 醫療關係團體가 指定의 取消를 要請한 때
- 4) 其他 療養取扱機關으로서의 機能을 다할 수 없을 때

나) 取消節次

- 1) 協議會는 療養取扱機關이 가項의 取消基準에 該當될 때에는 管轄市道知事에게 取消承認을 申請한다(法 施行規則 第19條).
- 2) 協議會는 管轄市道知事의 取消承認을 얻어 그 結果를 該當醫藥關係團體와 組合에 通知한다.

바. 療養取扱機關指定의 變更等

- 1) 療養取扱機關중 嘗初 現況申告書 内容에 變更事項이 있을 때에는 療養取扱機關은 醫藥關係團體의 長을 경유하여 그 變更內容을 協議會에 提出한다(別添書式 3 參照).
- 2) 醫藥關係團體의 長은 傘下 醫療機關 또는 藥局의 新規開設로 療養取扱機關 追加指定이 必要하거나 指定의 取消事由에 該當하는 醫療機關 또는 藥局이 있는 때에는 이를 協議會에 通報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도록 한다.

사. 療養取扱機關의 利用業務處理節次

가) 診療地域圈 診療

被保險者 및 被扶養者(被保險者)가 療養給與 및 分娩給與(保險給與)를 받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반드시 被保險者證에 設定된 診療地域圈內에서 保險給與를 받아야 한다.

아 래

- 1) 救急患者인 경우
- 2) 當該 診療圈內의 醫療施設에서는 治療가 불가능한 事由를 該當 診療圈內의 病院級 以上의 療養取扱機關에서 認定할 때
- 3) 當該 診療圈外에 出張, 旅行, 通勤, 通學 또는 其他 부득이한 事由를 組合이 認定할 때
- 4) 其他 組合으로부터 正當한 事由에 대하여 事前承認을 받은 때

나) 他診療地域 診療

上記 1)~4)項에 명시된 事由로 인하여 他診療地域에서 保險給與를 받고자 할 때에는 組合으로부터 他診療地域 診療承認書(別添書式 4 參照)를 發給받아 診療을 받고자 하는 療養取扱機關에 被保險者證과 住民登錄證, 他診療地域 診療承認書를 제시한 후 保險給與를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사전에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가 消滅한 때에 지체없이 提示하여야 한다(別添書式 5 參照).

- 1) 이 경우 保險給與는 本人이 保險給與對象임을 療養取扱機關에 알린 날로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음.
- 2) 他診療地域 承認을 받은 자가 入院治療를 받고 退院하여 來院治療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종전의 入院한 療養取扱機關에서 계속하여 診療을 받아야 한다고 擔當醫師가 판단한 때에는 그 傷病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

〈^부 악 1〉
요양급기판 지정내상 명단

| 지정번호 | 구 분 | 명 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機 關 名 : | 指 定 告 白 |
| 代 表 者 : | |
| 所 在 地 : | |

본 기관은 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依據 療養取扱機關으로 指定督
니다.

19 年 月 日

全 國 醫 療 保 險 協 議 會
會 長 金 立 三

188mm×256mm (원형 용지) 70g/m²

190mm×268mm (четверт) 180g/m²

아도 保険給與를 받을 수 있음.

다) 他診療地域 診療承認에 대한 醫師所見書 發給 : 他診療地域 診療承認書發給에 있어 醫師所見書 發給要領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1) 救急患者의 경우에는 醫師所見書欄에 응급사실 여부가 기재되어야 한다.
- 2) 當該 診療地域 내에 病院級以上으로서 그 傷病에 대하여 擔當할 專門醫 또는 醫療技術 및 醫療裝備의 不足 으로 診療를 할 수 없을 때 診療를 받은 病院의 醫師所見書를 發給해야 한다(別添書式 6 參照).
- 3) 同一 診療地域 내에 當該 診療科目에 있는 病院級以上 療養取扱機關이 없을 경우 病院級의 醫師所見書로 대신 한다.
- 4) 病院級以上的 專門醫 科目도 없고 一般醫師의 專門科目도 없을 경우 病院級 以上的 一般醫의 所見書로 대신 한다.
- 5) 他診療地域 診療承認書는 組合에서 組合의 所在地, 被保險者的居住地, 地診療地域 療養取扱機關의 所在地 등을 참작하여 組合이 정한 期日內에 제출하여야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組合이 당초 承認한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 6) 地域特殊性 등 기타 正當한 사유로 他診療地域 診療承認書를 組合으로부터 發給받았을 경우에는 醫師所見書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라) 移送

- 1) 療養取扱機關은 被保險者の 疾病, 부상 또는 分娩이 자기기관 專門이 아니거나 적절한 診斷 또는 診療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다른 療養取扱機關으로 移送하는 등 診療上 適切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別添書式 7 參照).
- 2) 移送의 紹與는 被保險者が 診療上 當該 療養取扱機關에서 다른 療養取扱機關으로 옮겨야 할 事由가 발생할 경우, 보행이 困難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3) 移送費用의 算定基準은 자동차, 기차등의 운송수단에 의한 실운임으로 하며 인부를 고용하여 들 것으로 移送하는 경우에는 인부임으로 한다.

요양취급기관 현황(변동)신고서 기재요령

◆ 주의사항

1. ※ 표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2. (1. 현황, 2. 변동)은 해당 항목에 ○표 한다.
3. 변동사항 기재시는 모든 항목을 다시 기재한다.
 - ① 지정번호는 요양취급기관 지정번호를 기재한다(8자리).
 - ② 면허번호는 의사 및 조산원의 면허발급번호를 기재한다.
 - ③ 요양기관 명칭을 기재한다.

(보기 : 카톨릭의과대학 부속 성바오로병원)

- ④ 병상수 기재(4자리)
(보기 : 01158)

- ⑤ 개설일자 기재
(보기 : 1979년 02월 15일)

- ⑥ 대표자명 및 ⑦ 대표전화 기재
(보기 : 김 창섭 433-3967)

- ⑧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를 채워서 기재한다.
(보기 : 391107-1079114)

⑨ 소재지는 요양취급기관의 소재지 주소를 기재한다.

(보기 : 경남 하동 진교 진교)
(도) (군) (읍) (리)

⑩ 우편번호 기재

(보기 : 580-311)

⑪ 지역구분은 대도시, 시, 군의 3개 항목중 한개의 번호에 ○표 한다.

(대도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⑫ 설립구분은 해당항목 1개항에 한해서 그 번호에 ○표 한다.

⑬ 인원현황

각 항목별 인원을 기재하고 총인원은 상단의 총인원 항목에 기재한다.

(보기 : 총 0001명 · 간호원 001명)

⑭ 거래금융기관의 해당번호에 ○표 한다.

(보기 : ① 조흥은행 ② 국민은행)

⑮ 지점명 기재

(보기 : 망원동 지점)

⑯ 거래은행의 진료비 수납구좌번호를 기재한다.

⑰ 거래은행지점의 Code를 기재하되 123일일 경우 00123으로 기재한다.

⑱ 진료과목의 해당번호에 ○표를 하고 ○표한 과목수를 총과목수란에 기재한다.

(보기 : ④ 3과목)

⑲ 종별 : 해당항목중 1개항에 한해 그 번호에 ○표 한다.

⑳ 가산율

① 지역구분
② 종별) 란을 참조하여 두가지 숫자로 기재한다.

(보기 : ④ 4%)

참고 : 가산율 적용의 예

| 지역별 | 종별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 대 도 시 | 20% | 10% | 4% | |
| 기 타(시·군) | 16% | 6% | 0% | |

㉑ 임상검사장비

장비가 있는 경우 해당장비 번호에 ○표 한다.

◆ 措置事項

가. 診療費收納口座開設

1) 조흥은행 또는 국민은행 중 하나의 은행支店에 診療費收納口座開設

2) 開設期間 : 79. 6. 15~6. 24

3) 開設者名義 : 療養取扱機關 代表者

나. 療養取扱機關現況 申告書提出

1) 書式 3號에 준한 現況申告書를 作成 所屬團體長을 경유 協議會에 提出

2) 提出期間 : 79. 6. 15~6. 30

다. 療養取扱機關標知板 부착

1) “의료보험요양기관” (녹색 한글) 標知板 부착

2) 부착기간 : 79. 6. 30 까지

요양취급기 판 (1. 원통) 신고서
(2. 벽동)

| 제작 번호 | ※ 일련 번호 | ※ 구 분 | 제수일 | 처비일 | 납부자인 | 착장자인 |
|-----------------|-------------|-----------|------------------------|--------------------|-----------|---------|
| 제작 번호 | 제작 번호 | 제작 기관 | | | | |
| 판례 번호 | | 설명 | | | | |
| ② 명 청 | | ⑦ 허가증 | ⑪ 병상수 | ⑫ 개설일자 | | |
| ④ 내 표적 | | ⑧ 허가증 | ⑬ 유형 | ⑭ 현지 | | |
| ⑤ 소 개지 | 지도 | ⑨ 인원현황 | ⑩ 우편번호 | ⑫ 지역구군 | ⑬ 전교파목 | ⑭ 관리자 |
| ⑯ 설립 구 분 | 국 | 01 의 사 | 총 | 01 내 병 | 총 | 과목 |
| 01 | 국립 | 02 쟈라의사 | 09 체파기공사 | 01 내 병 | 01 소 내 병 | 과 |
| 02 | 국립재학 | 03 조선원 | 10 체파원생사 | 병 | 02 신경정신과 | 과 |
| 03 | 공립 | 04 암 | 11 간호원 | 03 일반외과 | 01 비내인후과 | 과 |
| 04 | 학교 | 05 암수암인 | 12 진료보조원 | 04 정형외과 | 13 치과부과 | 과 |
| 05 | 복지 | 06 병원 | 13 의무기록사 | 05 신경외과 | 14 비뇨기과 | 과 |
| 06 | 사회복지 | 07 문화체육 | 14 행정요원 | 06 흉·복부외과 | 15 냉·사선과 | 과 |
| 07 | 사회 | 08 체육체육 | 15 양사 | 07 성형외과 | 16 업상병리과 | 과 |
| 08 | 체 | 09 체육체육 | 16 기타요원 | 08 마취내과 | 17 치과 | 과 |
| 09 | 체 | 10 금융기관 | 1. 국민은행 2. 조은은행 | 09 산부인과 | 18 세포생화학과 | 과 |
| 10 | 의료 | 11 예금구좌번호 | 11. 제설법 | 10 저침코드 | 19 종합병원 | 과 |
| 11 | 개 | | | | 4. 차병원 | 5. 치과의원 |
| ⑮ 가산율 | % | ② 입장차상비 | 1. 원미정 2. 부란기 3. 불광가도계 | 4. 혈운수조 5. 고압증기별금기 | 2. 병원 | 3. 의원 |
| ※ 허가증 | (원통) 신고합니다. | | | | | |
| 전국의료보험협의회 회장 규칙 | | | | | | |

전국의료보험협의회 회장 규칙

설교인

⑤

268 mm × 190 mm (한국용지 2급 60g/m²)

⑥

| 의료보험자증 번호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현주소 | 의료보험자 와의 관계 |
|-----------------|----------------|----------------------|----------------|----------------|
| 의료보험자 | | | | |
| 수신자 | | | | |
| 진료지역 | 여 | 승인신청지역 | | |
| 거주지역 요양취급기관명 | | 타진료권 요양취급 기관번호 | | |
| 신청구분 | 통근() 여행() | 통학() 여행() | 출장() 기타() | |

신청사유(구체적으로):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타진료권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④

신청인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귀하

위 신청자의 타진료권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승인함. 단 이 승인서
는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에 상기 승인신청 전료지역내의 요양취급기
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임.

19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④

| 의료보험자증 번호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현주소 | 의료보험자 와의 관계 |
|-----------------|----|----------------------|-------|----------------|
| 의료보험자 | | | | |
| 수신자 | | | | |
| 진료자 | | | | |
| 거주지역 요양취급기관명 | | 타진료권 요양취급 기관번호 | | |
| 신청구분 | 분 | 기금() | 기타() | |

신청사유(구체적으로):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타진료권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받았으
나 이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④

신청인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귀하

위 신청자의 타진료권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인정함. 단 이 승인서

는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에 상기 승인신청 전료지역내의 요양취급기
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임.

19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④

첨부 : 의사소견서 1부 188mm×256mm(1.4kg용지 2급 70g/m²)
첨부 : 의사소견서 1부 188mm×256mm(1.4kg용지 2급 70g/m²)

<서식 6>

의 사 소 전 치

| 구 블 | 상 봉 | 주 면 등 륙 면 호 | 현 주 소 |
|--------------|----------|------------------|-------|
| 피 보 험 자 | | | |
| 수 친 자 | | | |
| 상 봉 명 | | | |
| 진 료 기 간 | 19 . . . | • 부터 19 . . . 까지 | |
| 현지의 상태 | | | |
| 진 료 사 항 | | | |
| 담당의 사 의 소 | | | |

19

•

•

•

•

•

•

•

•

•

•

•

•

•

•

•

•

•

•

(4)

담당의 사 명(의) 및 면 호
상 봉

요양(의) 급기 표면 침

소 재 지

명(의) 원장

조 산 소

(4)

소 재 지

명(의) 원장

조 산 소

(4)

•

•

•

•

•

•

•

•

이송요양급여 인정신청서

| 이송요양급여 인정신청서 | |
|--------------|---------------|
| 피 보 험자 | 피 보 험자 성 명 |
| 수 친 자 | 수 친 자 성 명 |
| 상 봉 명 | 상 봉 명 |
| 진 료 기 간 | 이 송 구 간 |
| 현지의 상태 | 요양(의) 급기 표면 침 |
| 진 료 사 항 | 소 재 지 |
| 담당의 사 의 소 | 신 청 인 |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

•

•

•

•

•

•

•

•

•

•

•

•

•

•

•

•

•

라. 指定番號變更

1) 既히 公務員 및 私立學校 教職員 醫療保險公團에서 賦與받은 指定番號는 79.7.1부터 無效로 하고 協議會가 부여한 新規番號로 일제 更新使用(新規番號로 統一)

2) 新規番號賦與方法

| | | | | | | | | |
|----|---|---|---|---|---|---|---|---|
| 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①② : 진료지역

서울 11, 부산 21, 경기 31, 강원 32, 충북 33, 충남 34, 전북 35, 전남 36, 경북 37, 경남 38, 제주 39

③ : 의료기관 개설 형태

④⑤⑥⑦ : 일련번호

⑧ : 접두자

3. 公知事項

1) 79.7.1부터 진료지역을 명시한 통일된 양식으로 피보험자증을 일제 更新함.

2) 양식 : 별지 참조.

<別紙 1>

(1)

| | |
|------------|---|
| 제 | 종 |
| 의료보험 피보험자증 | |
| ○○○ 의료보험조합 | |

95mm×150mm

(2)

| | | |
|-----------------------------|----------|----|
| 제 | | 종 |
| 의료보험 피보험자증 | | |
| 피 보 험 자 | 기호 | 번호 |
| | 성명 | 성별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자격취득일자 | 19 . . . | |
| 진로지역 | | |
| 사업 장 | 명칭 | |
| | 소재지 | |
| 위 사람은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임을 증명함. | | |
| ○○○ 의료보험조합 | | 인 |

95mm×150mm

(3)

| | | | |
|--------|--------|--------------|----|
| 피부양자명단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피보험자 와의관계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mm×150mm

(4)

| | | | | | |
|--------|------|-----------|---------------------------------|--------|----|
| 보험급여기록 | | | | | |
| 성명 | 진료기간 | 진료비 총액 | 용 양 취 급 기 기 명 | 금 액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mm×150mm

점 일 단

1. 이 회 보험자증을 교부받으면 주소란에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진급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지역에 소재하는 요양 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3. 요양체급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사전에 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요양체급기관은 이 증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받아 청료를 받을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요양체급기관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료가 끝난 때까지 이 증서를 보관하고 진료상황을 기재하여 반려하여 줍니다.
6. 친료비총액 중 30%의 경우에는 20%, 외래의 경우에는 30%의 청당하는 금액은 본인의 애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적용 지불하여야 합니다.
7. 회 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용자를 거쳐 보험자에게 이 증서를 반려하여 줍니다.
8. (2), (3)의 기재사항에 명시이 있을 때에는 조류에 제출하여 경정을 받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II. 診療費審查 및 支拂業務 一元化

1. 一般事項

가. 基本方針

- 1) 第1種 醫療保險診療費 請求·審查 및 支拂窗口를 保險者團體인 全國醫療保險協議會로 一元化함(醫療保險法第35條에 의거 79.5.28字로 保健社會部長官이 協議會에 委託指示).
- 2) 協議會內에 專門審查機構를 設置하여 79.7.1부터 業務를 開始함.

나. 診療費審查 및 支拂業務處理節次 <節次圖 參照>

2. 診療費 請求

가. 請求節次

- 1) 療養取扱機關은 療養給與 또는 分娩給與에 關한 費用, 即 診療費를 79.7.1以後 診療分부터는 全國醫療保險協議會에 直接 請求한다.
- 2) 診療費 請求時 診療酬價請求明細書는 保健社會部長官이 告示한 診療酬價基準의 “診療酬價基準點數表” 및 “藥價基準額表”에 의거 作成하여야 한다.
- 3) 療養取扱機關은 診療費 請求를 月別로 하고 診療費請求書에 每 1個月分의 診療酬價請求明細書를 入院, 外來, 齒科別로 作成添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協議會에 提出한다(別添書式 8 參照). 다만 必要時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4) 療養取扱機關은 協議會가 同機關의 편의를 위하여 全國主要地區別로 指定한 “診療費 請求書接受業務代行組合”(以下 代行組合)에 (別紙 1 代行組合名單參照) 「人便에 限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代行組合에서는 請求書 및 同明細書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및 오기를 정정내지는 보완하여 協議會로 送付한다(이는 請求審查 結果를 경화히 電算處理하여 診療費支拂에 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임).

나. 記載要領(別紙 2 “診療酬價請求明細書” 記載要領 參照)

3. 診療費支拂

가. 審查結果通報

- 1) 協議會는 診療費請求內譯에 대한 審查結果를 해당 療養取扱機關에 通報時 증감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증감사유 및 그 금액을 명시한 심사내역서를 송부한다.
- 2) 協議會는 審查結果에 따라 特別히 유의시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통고한다.
- 3) 療養取扱機關이 診療費 請求時 아래 기재사항이 누락시에는 審查不能임으로 보완요청한다.
○ 조합명 ○ 꾸보협자 인격사항 ○ 상병명 및 상병기호 ○ 요양취급기관 명칭 ○ 진료일수 ○ 무자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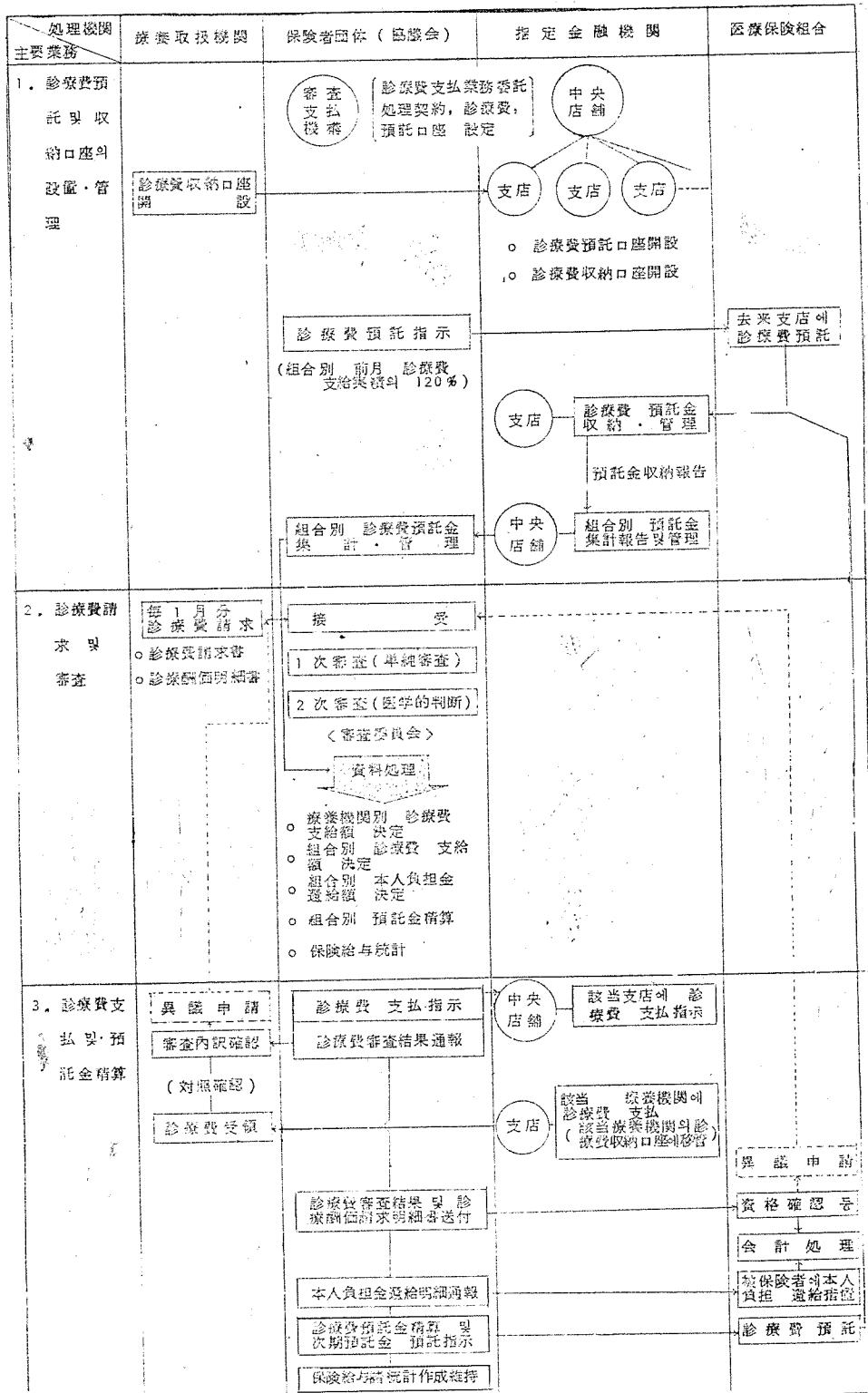
나. 診療費支拂

- 1) 協議會는 療養取扱機關에 審查內譯書送付時 審查決定額에 따라 本人一部負 搶還給額을 공제한 조합부담에을 실지급금으로 하여 지급통지서를 발급한다.
- 2) 協議會는 동시에 協議會가 支給業務를 委託한 金融機關에 支給指示書를 송부한다.
- 3) 金融機關 中央店舗는 協議會가 개설한 診療費預託金 口座에서 金融機關取扱店舗에 개설된 요양취급기관의 診療費收納口座로 口座送金하나 오지 벼지 등 지리적 여전으로 診療費收納口座를 개설치 못한 요양취급기관에 대해서는 中央店舗에서 직접 당해 요양취급기관으로 送金할 수 있다.

다. 異議申請

- 1) 協議會로부터 審查結果를 接受한 療養取扱機關이 審查內譯上에 異議있을 때에는 1個月 以內에 協議會로 異議申請을 하여야 한다.
- 2) 診療費收額 후 支給額上에 異議 있을 경우에도 協議會에 異議 申請할 수 있다.

医療保険診療費審査・支払業務一元化処理節次図



<서식 8>

| | | | | | | | | | | | |
|-----------------------|------------------|-------------|------------------|---------------------------------|-----------------------|------------------|--------------|--------------|----------|--------------|--|
| 서식 번호 | | G | i | o | 1 | | | | | | |
| *일련 번호 | | | | | | | | | | | |
| 오 양 취 급 | ① 기 호 | | | | | 구 분 | *점 수 일 | *처 리 일 | 담당 자인 | #화 약 인 | |
| | ② 명 칭 | | | | | | | | | | |
| 기 관 | ③ 조 재 지 | 시 도 | 구 군 시 | 동 면 읍 | 현 지 | 전 화 번 호 | | | | | |
| ④ 거 래 운 행 | | 운 행 | ⑤ 지 점 명 | 지 점 | ⑥ 구 좌 번 호 | | | | | | |
| 구 분 | | ⑦ 건 수 | ⑧ 총 점 수 | ⑨ 본 일 부 부 달 금 | ⑩ 청 구 금 액 | | | | | | |
| 일 원 | 1 | 천 | 천 | 천 | 천 | 천 | 천 | 천 | 천 | 천 | |
| 외 래 | 2 | | | | | | | | | | |
| 치 과 | 3 | | | | | | | | | | |
| 제 | 4 | | | | | | | | | | |
| ⑫ | | ⑪가산율 | | | | | | | | | |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19 년 월 일
부터 19 년 월 일까지의 건로비를 위와 같이 정구합니다.

19 년 월 일

병의원명
청구인

⑬

전국의료보험협의회 회장귀하

별첨: 건로수가 청구명세서 매

190mm X 268mm (전면용지 50g/m²)

진료비 청구서 기재요령

주의사항

1. *표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2. 모든 기록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다.
3. 모든 기록은 흑색볼펜을 사용
4. 모든 전수, 접수, 금액의 기재에는 소숫점이 하가 없도록 하고 규정된 자릿수에 맞추어 기재한다.
5. 계(구분 4)의 총전수와 별첨란의 명세서 매수가 일치하도록 한다.
6. 계(구분 4)의 각 항목은 구분 1, 2, 3의 각 항목을 세로로 합한 항목이므로 구분 4의 각항목들은 구분 1, 2, 3의 세로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7. 년·월·일 기재시는 한자리 숫자의 경우, 앞에 0을 채워야 한다.
(보기 : 19[7][9]년 [0]5월 [1]5일)
- ①-③ : 요양취급기판 지정번호(8자리) 및 명칭을 기재한다.
- ⑥ : 요양취급기판 혈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④ : 거래은행명을 기재한다(보기 : 조흥 또는 국민).
- ⑤ : ④의 거래은행 지점명을 기재한다(보기 : 서소문).
- ⑥ : 거래은행의 거래구좌번호를 기재한다.
- ⑦ : 진료전수는 입원, 외래, 치과별 진료비 청구명세서 매수를 기재한다.
- ⑧ : 매진료비 청구명세서의 총접수란을 입원, 외래, 치과별로 합산하여 기재한다.
- ⑨ : 본인 일부부담금은 청구명세서상의 본인 일부부담액을 입원, 외래, 치과별로 합산한 금액은 기재한다.
- ⑩ : 청구금액은 청구명세서상의 청구액을 입원, 외래, 치과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 ⑪ : 아래 보기와 예에 따라 두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보기 : [1][6]%)

(예)

| 지역별 | 종별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 대도시 | | 20% | 10% | 4% |
| 기타(시, 군) | | 10% | 6% | 0% |

⑫ : 청구기간일자(~부터 ~까지의 진료비)는 각 청구명세서 전들의 진료만료일(중간청구의 경우는 중간청구마감일)의 범위를 기재한다.

⑬ : 배행조합의 지정번호를 기재한다.

(보기 : 부산사상공단은 [2][1][0][1])

<별지 2>

診療費請求書接受業務代行組合名單

(20個組合)

| 지역별 | 소재지 | 지정번호 | 代行조합명 | 대표이사명 | 住 所 | TEL |
|-----|------|------|----------|-------|-------------------|---------|
| 부산 | | 2101 | 사상공단 | 이 환섭 | 북구 주례동 693-10 | 93-2971 |
| 경기 | 인천 | 3101 | 인천지방공단 | 김근배 | 동구 송림 5동 43-31 | 2-8950 |
| | 성남 | 3102 | 성남공단 | 고창봉 | 성남시 상대원동 517-14 | 2-5594 |
| | 수원 | 3103 | 경기제4지구조합 | | | |
| | 의정부 | 3104 | 경기제6지구조합 | | | |
| | 안양 | 3105 | 경기제7지구조합 | | | |
| 강원 | 춘천 | 3201 | 춘천공단 | 길종준 | 춘천시 조양동 37-24 | 2-4690 |
| | 원주 | 3202 | 원주공단 | 김효인 | 원주시 우산동 411-16 | 7819 |
| | 강릉 | 3203 | 강원제3지구조합 | | | |
| 충북 | 청주 | 3301 | 청주공단 | 임심철 | 청주시 북대동 100-15 | 2-1431 |
| 충남 | 대전 | 3401 | 대전공단 | 임현동 | 대전시 동구 삼성동 369-1 | 3-7955 |
| 전북 | 전주 | 3501 | 전주공단 | 권희선 | 전주시 팔복동 1가 338-18 | 3-4453 |
| 전남 | 광주 | 3601 | 광주공단 | 김영칠 | 광주시 서구 화정동 23-1 | 3-3475 |
| | 목포 | 3602 | 목포공단 | 박성주 | 목포시 상동 251-32 | 2-9074 |
| 경북 | 대구 | 3701 | 대구지방공단 | 김상기 | 북구 노원동 3가 175 | 32-4331 |
| | 구미 | 3702 | 구미공단 | 신광도 | 구미시 공단동 204 | 3128 |
| | 포항 | 3703 | 포항철강공단 | 김세운 | 포항시 남빈동 417-18 | 2-0715 |
| 경남 | 마산 | 3801 | 마산수출자유지역 | 안동녕 | 마산시 양덕동 975 | 5-6905 |
| | 울산 | 3802 | 울산공업지역 | 유병래 | 울산시 성남동 14 | 3-2315 |
| | 전주 | 3803 | 경남제3지구조합 | | | |
| 계 | 20개소 | | | | | |

“진료수가 청구명세서” 기재요령

| 요양취급기관 |
|---------------------------|
| 번호—요양취급기관 지정번호를 기재한다. |
| 명칭—당해 요양취급기관의 공식명칭을 기재한다. |
| 종별—해당란에 ○표 한다. |
| 지역—해당란에 ○표 한다. |

I. 일반사항

- 가. 입원, 외래, 치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모든 기체사항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체하되 흑색 필기도구를 사용한다.
다. 요양취급기관 지정번호는 반드시 고무인을 사용하되 규격은 청구명세서의 해당란의 규격과 동일하게 한다.
라. 청구명세서 맨아래부분에는 입원, 외래, 치과별 분류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
마. 요양취급기관이 기체나 기술의 결여로 타요양기관에 진료의 일부를 의뢰했을 때에는 해당진료기관의 청구서 또는 진료비 산출명세서를 첨부한다.
바. ※한은 전국의료보험협의회에서 기체한다.

보험자란(명칭, 기호) : 피보험자증을 발행한 조합 명칭을 기재한다. 조합의 기호 및 피보험자증의 번호는 해당 피보험자증에 명시된 번호를 기재한다.

청구일 : 진료비 청구일자를 기재한다.

피보험자성명 : 피보험자증에 기체를 피보험자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수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진료를 받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한다.

성별 : 해당란에 ○표 한다.

피보험자와 관계 : 피보험자, 피부양자 해당란에 ○표 한다.

상병명 :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병의 명칭을 기재한다.

상병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 2상병명을 팔호하여 기재한다.

분류기호 : 999상병분류에 의거 그 분류기호를 기재한다. (A)

진료과목 :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을 기체하되 진료과목이 2개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진료과목만을 기재한다.

진료개시일 : 당해요양취급기관에서 진료를 개시한 년, 월, 일을 기재한다.

진료(입원)일수 :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일수를 기체하되 입, 퇴원도 1일로 계산한다. 외래의 경우에는 진료를 행한 일수를 기입한다(동일인의 초진 및 재진을 1일에 2회 이상 행하여도 실일수는 1일로 기입한다).

상해의외인 : 상해의 외인은 상해로 인한 경우에 999상병분류 “상해의 외인”에 근거 기재한다. (AE)

(예) : 상해의 외인이 열차와의 충돌에 의한 자동차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상해외인란에 “810”이라 기재하고 총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인 경우에는 “922”라 기재한다.

진찰료 및 약제(I) : 기본진찰료, 별표 2 약가기준액표 및 수입의약품, 특정기체의 구입가동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접수만을 기재한다.

진료행위(II) :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의 기본 접수만을 기재한다.

심사내역 : 기입하지 않는다.

II. 입원, 외래

1. 진찰료 :

초진 및 재진은 기본진찰료와 외래병원관리료를 합한 접수에 그 회수를 승하여 기재한다. 단, 심야(22:00—

06:00)인 경우에는 기본진찰료에 50%를 가산한다.

2. 입원료 :

- 가. 입원료는 입원실료, 환자관리료, 병원관리료를 합한 점수에 입원일수를 승하여 기재한다.
나. 내과, 신경정신과 및 소아과에 입원시는 환자관리료에 50%를 가산하여 산정된 점수를 기재한다.
다. 병원관리료 및 환자관리료는 입원일로부터 15일까지는 소정점수를, 15일 이상 30일 까지는 소정점수의 80%만을 산정하며 입원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에 70%만을 산정하여 기재한다.

3. 투약 및 처방전료 :

- 가. 내복 및 침전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내복항에, 돈복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돈복항에 외용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외용항에 각각 총투약 단위점수 및 약제의 총점수를 기입한다.
다만, 입원의 경우에는 내복, 돈복, 외용의 구분기재를 생략한다.
나. 투약점수가 20점을 초과할 때에는 내역 설명란에 소정단위당의 약제명, 총투약량을(보기)와 같은 순서로 기입한다.

(보기)

$$\text{약제명} \quad \text{규격당점수} \times \text{총투약량} = \text{총점수}$$

$$\text{피시링 캡셀 } 0\text{점} \times 20(\text{캡셀}) = 00\text{점}$$

$$\text{노루보정 } 0\text{점} \times 40(\text{정}) = 00\text{점}$$

- 다. 기본조제는 내복약일 경우에는 3일분까지, 돈복약일 경우에는 2일분까지, 외용약일 경우에는 5일분까지를 1회로 하여 그 이상일수 투약하여야 할 동일 체제를 분할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입원시 조제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 마.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회수에 소정점수를 승하여 기입한다.

- 바. 입원환자의 퇴원시에는 투약하였을 경우에는 내역 설명란에 "()일분" 투약이라고 기입한다.

4. 주사료 :

- 가. 피하근육주사, 경맥내주사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에 주사일수를 승하여 점수를 기입한다.
나. 주사약대가 20점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 그 내역을 설명란에 소요단위당의 사용 약제명, 총투약량을 보기와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보기)

$$\text{약제명} \quad \text{규격당 점수} \times \text{총투약량} = \text{총점수}$$

$$\text{케타시링브이 } 1\text{gm } 0\text{점} \times 12(\text{gm}) = 00\text{점}$$

$$5\%포도당 100\text{ml } 0\text{점} \times 2\text{병} = 00\text{점}$$

- 다. 특정기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기체명, 점수 및 회수를 내역 설명란에 기재한다.

- 라. 100ml 이상을 초과하는 경맥내주사의 행위는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기타란에 그 회수를 기재한다.

참고 : 1회분의 주사량이 500ml를 초과할 경우에는 500ml 또는 그 단수를 증가할 때마다 20점을 가산한다.

*5%포도당 2,000ml를 3일간, 마크로박스 500ml를 1회 투입했을 경우에는

$$\{49점 + (20점 \times 3회)\} \times 3일 + 49점 = 376점$$

$$*1일에 1,000ml 투입 49+20 \quad 1,500ml 투입 49+(20 \times 2)=89 \quad 3,000ml 투입 49+(20 \times 5)=149$$

5. 마취료 :

- 가. 마취의 종류와 회수를 기입한다.

- 나. 마취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는 구입가격이 50원을 초과할 때만 약제의 총가격을 10원으로 제한점수를 기입하고 약제명, 규격단위(ml, g 등) 및 사용량을 설명란에 기입한다. 다만, 마취중에 속크등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된 약제에 관하여는 주사등 당해치료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 다. 신생아마취는 60%, 만 1세 미만의 유아 및 70세 이상의 노인은 30%에 상당하는 점수를 소정점수에 가산하여 진료행위란에 기입하고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 라. 심야(22:00-06:00)에 마취시는 소정점수에 30%를 가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한다.

6. 이학요법료 :

- 가. 점수표 제 7 장의 이학요법의 소정점수에 회수를 승한 점수를 기재한다.
- 나. 방사선입자의 비용이 외에 소요된 각종 약제 및 재료료는 별도 가산하지 아니하며 방사선입자 비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설명란에 기재한다.
- 다. 점수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학요법 중에서 특수한 이학요법의 비용은 점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학요법 중에서 가장 근사한 이학요법의 각 분류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명칭 및 근사한 요법의 명칭을 설명란에 기재한다.

7. 신경정신요법료 :

점수표 제 8 장의 각 분류 소정점수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요법명, 회수를 기재한다.

8. 처치 및 수술료 :

- 가. 처치 및 수술명, 회수 및 점수를 기입한다.
- 나. 특정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점수로 환산하여 기타란에 가산 산정하며 설명란에 그 사용 재료명을 기재한다.
- 다. 점수표 제 9 장 제 1 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단순한 처치 및 수술비용은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것으로 하되 약제 또는 특정치료재료를 사용하였을 때에 한하여 그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고 설명란에 그 명칭 및 점수를 기입한다.
- 라. 점수표 제 9 장 제 1 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특수한 처치 및 수술은 점수표의 처치 및 수술중 [가장 근사한 분류]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내역을 설명란에 기입한다.
- 마. 대청기관에 관한 처치 수술은 특히 양측이라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편측 기관의 점수를 산정하여 기입한다.
- 바. 수혈을 행한 경우 그 회수, 점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수혈에 사용한 생혈 및 보존혈외 1회 사용량 기타 사용약제에 관하여는 그 약명과 사용량의 내역을 설명란에 기입한다.
- 사. 기브스료의 산정은 석고봉대재료 구입가의 점수와 동점수의 130%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아. 심야(22:00-06:00)에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는 소정점수에 30%를 가산하여 진료행위란에 기재한다.
- 자. 제 9 장 2절에 기재된 소정점수와 혈액관리법 제 7 조 및 제 12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혈액원에 서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 공급가를 점수로 환산 합산하여 산정한다.

9. 검사료 :

- 가. 검사항목, 회수 및 점수를 기입하되 내역 설명란에 검사명과 반복회수를 상세히 기재한다.
- 나. 방사선 동위원소의 명칭과 사용량을 설명란에 기입한다.
- 다. 대청기관의 검사는 양측이라는 특기가 없는 한 양측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라. 점수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검사로서 특수한 검사는 유사한 검사항목의 검사료를 산정 기입한다.

10. X-선 판독료 및 촬영료 :

행위별 X-선 수가조견표(별도매부)에 의하여 총점만 기재하되 내역란에는 촬영부위, 촬영매수, 재료대등을 예시와 같이 기입한다.

(예 시)

1. 단순촬영(흉부 2매)의 경우

1) 흉부 단순촬영 2매(14×17) 225점 2) 재료대 00점

2. 특수촬영

위장촬영(스팟트 및 투시 포함) 8매의 경우

1) 위장조영 촬영(스팟트 및 투시 포함) 1175점

2) 재료대 3매(10×12), 5매(8×10)바륨 400g 00점

11. 소 계 : I, II 별로 각각의 합계 점수를 기재한다.

12. 가산율 : II의 ⑪ 소계점수에 가산율을 승한 점수를 기재한다.

13. 총점수 : (1)의 ⑪의 소계와 ⑫ 가산율점수의 합계한 점수를 기입한다.

14. 청구액 : 총점수에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점수에 10을 승하여 기입한다.

15. 입원, 외래별 본인부담율을 총점수에 승한 금액을 기재한다.
16. 심사결정액은 전국의료보험협의회가 심사 결정한 액을 기입한다.

III. 치 과

가. “상병명”은 우리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병의 명칭을 기재한다.

상병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2개를 기재한다.

(부위) 표시는 치료부위를 ——의 해당 부분에 표시한다.

나. 분류기호는 “999 상병분류표”에 의거 그 기호를 기재한다.

다. 기타 일반 사항은 의과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진찰료 : 의과의 경우와 동일

2) 입원료 : 의과의 경우와 동일

3) 투약 및 처방전료 : 의과의 경우와 동일

4) 주사료 : 의과의 경우와 동일

5) 바취료 : 전신 마취등을 해야 할 특수한 상황에서의 마취를 접수표 제 6장에 의거 기재하고, 마취에 사용 약제명, 단위 및 접수를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산정 기입하고 사용된 약제 및 제조회사명을 설명란에 기재한다.

6) 치치 및 수술료 : 치치 및 수술명을 해당란에 ○표하고 그 단위접수 및 치아수를 승한 액을 우측 접수란에 산 기재한다. 명세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치치 및 수술로서 진료수가 기준 제 9장에 기재되어 있는 치치 및 수술은 그 명칭을 기타란에 기재하여 소정접수를 산출하되 그 분류번호 및 내역을 설명란에 기재한다. 치치 및 수술의 약어표는 다음과 같다.

즉치 = 즉일충전처치, 보통 = 보통처치, 복조 = 치수복조, 제거 =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 지각파민 = 지파민처치, 낭소파 = 치주낭소파, 치석제거 = 치석제거, 발치 = 유—유치, 전치, 구—구치, 난—난발치, 근치 = 관치료, 확대 = 균관확대, 근총 = 균관충전, 직총 = 직발즉시근총, 실즉총 = 실활발수족일 충전, 생절 = 생활처절단, 실절 = 실활치수절단, 절개 = 치근농양절개, 균낭적출 = 치근낭포적출수술, 외소염 = 구강외소염수술, 박술 = 치근박리소파수술, 연외처 = 구강연조직질환의 처치, 후출혈 = 외파후 처치.

7) 치관수복 : 소정접수를 기재한다.

8) 기타 : ①—⑦ 이외의 검사, X-선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접수와 내역을 기입한다.

9) 소계 : (I), (II)의 합계 접수를 기재한다.

10) 가산율 : (II)의 9) 소계접수에 가산율을 승한 접수를 기입한다.

11) 총접수 : (I)의 9) 소계접수와 10)접수를 합한 접수를 기입한다.

12) 청구액 : 총접수에 10을 승한 금액에 입원·외래별 조합부담율에 따라 금액을 환산한 후 10원 미만을 결사금액을 기입한다.

13) 본인일부부담액 : 총접수에 10을 승한 금액에 입원·외래별 본인부담율에 따라 금액을 환산한 후 10원 미만을 결사한 금액을 기입한다.

14) 심사결정액 : 전국의료보험협의회가 심사 결정한 액을 기입한다.

15) 총접수는 소수점이 하 절사하고 기재

16) 금액계산은 10원 미만 절사 기재

17) 계산에 (외래).....30%

(I) 소계 111점 (II) 소계 123점

가산율 12%라면

$$\text{총접수 } 111 \times 123 \times 1.12 = 111 \times 137.76 = 248.76 \quad 248\text{점(절사)}$$

$$\text{본인부담금 } 2,480 \times 30\% = 744\text{원} \quad 740\text{원(절사)}$$

$$\text{청구액 } 2,480 \times 70\% = 1,736\text{원} \quad 1,730\text{원(절사)}$$

8) 치과환자가 입원일 경우, 명세서서식은 “입원”서식을 사용한다.

치과

| 서식번호 | G i 0 4 | 치과진료수가청구명세서 | | | | 번호 | | | |
|-------------------------------|-----------------------|--------------------------|-----------------------------|---------------------------|--------|---------------------------|---------------|--------|----------|
| 보험자 | | | | | 요양진급기준 | 명칭 | | | |
| 소속기관 (의료기관명) 별장 (부호) | 기호 | | | | | 승별 | 종합병원, 병원, 의원, | | |
| 피보험자성명 | 성구일 년 월 일 | | | | 지역 | 대도시, 기타지역 | | | |
| 수진차성명 | 수진차주민등록번호 | | | | 선별 | 의부설자외과부 | | | |
| 상명명 및 부위 | | | | | 남여 | 1.의부설자, 2.의부설자 1.초인, 2.어린 | | | |
| A-AN- | | | | 분유번호 | | | | 진료비지급 | 진료(입院)일수 |
| | | | | | | | | 진료증교환: | |
| 상해의외인 | AE- | 치료비및 약제(1) | 진료행위 (II) | 분류 | 유형 | 점수 | 수령 (회수) | 총점수 | |
| 1. 진찰료 (의뢰병원 관리료포함) | 호진 성야 재진 성야 | 회 회 회 회 | 검 검 검 검 | | | | | | |
| 2. 입 치료 (입원치료포함) | 입원 기타 | 일 | 경 경 | | | | | | |
| 3. 무약 및 처방전료 | 약 제 제 | 내복 12× 동복 4× 외용 6× | 단위 단위 단위 | 검 검 검 | | | | | |
| | 조제 | 회 | | 검 | | | | | |
| | 처방전 15× | 회 | | 검 | | | | | |
| 4. 주사료 | 피하근육내 정액 내 가다 | 일 일 회 | | 검 검 검 | | | | | |
| 5. 마취료 | 마취 약제 | 치 | 검 | 검 | | | | | |
| | 목처 160× | 보통 22× | 보조 22× | | | | | | |
| | 제 25% 기 45% | 저자파인 22× | 지수기자 22× | | | | | | |
| | 당 75% 소파 235% | 치석 제거 | 19× 55× | | | | | | |
| 6. | 반우 치 55× | 걸 구 난 60× 90× | 매 220× 330× | | | | | | |
| | 발 50% 65% 수 75% | 군 22× 27× 치 20× | | 검 | | | | | |
| 7. 치관수복 | 근 45% 50% 총 55% | 직 200× 220× 총 230× | 설 120× 140× 총 160× | 설 190× 설 110× 설 55× | | | | | |
| | 걸개 110% | 근발적출 565% 390% | 최소법 11.0% 17.7% 22.0% | | | | | | |
| | 마리Austin 550% 880% | 현회치 19% 35% | 후술현 19% 35% | | | | | | |
| | 약제 | | | 검 | | | | | |
| | 기타 | | | 검 | | | | | |
| 8. | X-Ray | | | 검 | | | | | |
| 9. 소계 | | | 검 | 검 | 구분 | 코드 | 증정점수 | | |
| 10. 가산율 | | % | 검 | | | | | | |
| 11. 총점수 | | 점 | 검 | | | | | | |
| 12. 본인일부부담액 | | 원 | 원 | I | 지부장 | 심사 | 심사 | 위원장 | |
| 13. 청구금액 | | 원 | 원 | II | | | | | |
| 14. 심사결정액 | | 원 | 원 | 계 | | | | | |

* 소속기관내의 ()내의 사항은 조합의 경우임 (일련번호 -)

※ 보험부담은 조합의 경우 "×××외로보험 조합", 공단의 경우 "의료보험 관리공단"이라 기재할것.

190mm × 220mm